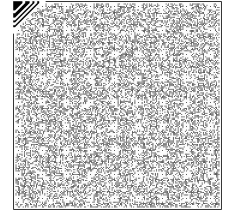




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

# 보건복지부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**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일부개정고시(제2020-183호) 집행정지 연장안내**

## 1. 관련

- 가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(약제) (고시 제2020-183호, 2020.8.26.)
- 나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803(2020.8.31.)
- 다.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(2020.9.9.)

2. 상기 호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고시(고시 제2020-183호)에 대한 잠정 효력정지가 2020년 9월 29일까지 연장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. 끝.

## 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기초의료보장과장, 약무정책과장, 국립정신건강센터장, 국립내주병원장, 국립부곡병원장, 국립춘천병원장, 국립공주병원장, 국립소록도병원장, 국립재활원장, 초달청장, 국방부장관, 국가보훈처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치과병원협회장, 대한약사회장, 대한간호협회장, 한국병원약사협회장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,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,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

주무관	<b>박영호</b>	서기관	<b>이선주</b>	보험약제과장	전결 2020.9.11. <b>양윤석</b>
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보험약제과-3010 (2020.9.11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56 팩스번호 044-202-3935 / [emile05@korea.kr](mailto:emile05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